

제270회 강서구의의회 임시회  
행정·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

2020. 4. 24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·재무위원회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  
전문위원 배 금 택

## 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020 - 28
- 나. 제 출 자 : 송순효 의원 외 8명
- 다. 제출일자 : 2020년 4월 13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4월 20일

## 2. 제정이유

서울특별시 강서구민 중 비문해자에 대한 문해교육 시행에 대한 근거 마련을 통하여 구민의 학습권 보장과 함께 평생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나. 문해교육의 대상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다. 문해교육의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라. 문해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마.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한 사업 추진을 규정함(안 제6조)
- 바. 문해교육 사업에 대한 민간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- 사.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교육기본법」 제3조, 제4조, 제10조
- 「평생교육법」 제5조, 제39조 및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2조

나. 협조부서: 교육청소년과

다. 입법예고(2020. 4. 14. ~ 4. 19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-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비문해자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 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문해자와 문자해득교육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(안 제2조)
  - 비문해자 :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
  - 문자해득교육 :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

※ 해득 : 뜻을 깨쳐 앎

해독 : 어려운 문구 따위를 읽어 이해하거나 해석함

- 문해교육 대상을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한정하여 규정함(안 제3조)
- 문해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문해교육 홍보와 자료보급 및 관련 단체의 지원육성, 관련기관과의 협력, 행사 개최 등이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규정함(안 제5조)
-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규정을 정하였고 이는 「평생교육법」 제16조제2항에서의 지역교육감과의 협의 취지와 부합함(안 제6조)
- 문해교육사업의 지원으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공공시설 이용요청에 대해 협조 조항을 두어 시설이용에 협조토록 하였으며(안 제7조제1항), 제2항에서는 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제72조에서 문해교육 지원의 범위와 근거를 정하고 있음(안 제7조제2항)
-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해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있도록 정함(안 제8조)

#### 다. 종합 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39조에 따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강서구 거주 비문해자에 대해 문자해득교육의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
- 그간 한글을 읽고 쓸 줄 모르는 강서구 거주 비문해자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습득과 이해 및 사고능력을 배양할 수 있음에 따라

지역단위 평생교육 진흥과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 
사료되나

- 다만, 제7조제2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항은 「평생교육법」  
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문제점은 없으나, 지원  
범위와 기준을 좀 더 구체화 할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## □ 평생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3. "문자해득교육"(이하 "문해교육"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5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·시설·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제39조(문해교육의 실시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초·중학교에 성인을 위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설치·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·법인 등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□ 평생교육법

제72조(문해교육의 지원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
2.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
3.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

②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.

## □ 교육기본법

제3조(학습권)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,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제4조(교육의 기회균등) ① 모든 국민은 성별, 종교, 신념, 인종, 사회적 신분,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사회교육) ①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.

② 사회교육의 이수(履修)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.

③ 사회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·경영 등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